

개명신고서 (년 월 일)				※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, 선택 항목에는 ‘영표(○)’로 표시하기 바랍니다.					
① 개 명 자	본인 성명	개명 전 이름				②개명 후 이름			
		한글	(성) / (명)	한자	(성) / (명)	한글	(성) / (명)	한자	(성) / (명)
	본(한자)			주민등록번호		-			
	등록기준지								
	주소								
③허가일자		년 월 일		법원명					
④기타 사항									
⑤ 신 고 인	성명	(서명 또는 날인)			주민등록번호		-		
	자격	①본인 ②법정대리인 ③기타(자격:)							
	주소				전화			이메일	
⑥제출인		성명			주민등록번호		-		

※ 이 신고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- ①란: 본인의 성명은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을 나누어 기재합니다.
- ②란: 개명 후 이름(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개명허가를 받은 이름)을 기재 하며, 한자가 없는 경우는 한글난에만 기재합니다.
- ③란: 개명허가일자(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연월일)를 기재합니다.
- ④란: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- ⑤란: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개명 후의 이름을 기재합니다.
- ⑥란: 제출인(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].

1.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.
2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]
 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: 신분증명서
 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 -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
※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